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의 예외인정범위 확대(영 제35조의6제1항제8호)

(1) 한국산업은행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한도의 제한이 없으나, 최근에 신설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대하여는 출자한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2) 출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투자조합에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추가함.

(3)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결산순이익금의 현물배당 방법 규정(영 제37조의3 신설)

(1)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어 출자자에게 결산순이익금 중 일부를 배당하도록 하고, 배당방법 중의 하나로 현물배당을 허용함에 따라, 현물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한국산업은행의 현물배당 대상은 한국산업은행이 출자 받

은 현물로 하고, 현물의 평가방법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현물배당의 대상, 현물의 평가방법이 명확하게 됨에 따라 현물배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

2005년12월28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재정경제부장관 한 덕 수

●대통령령 제19192호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6월이내”를 “1년 6월 이내”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채무의 보증율”을 “채무의 보증이나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파생금융거래로서 통화를 상품으로 하는 거래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착오 또는 과실에 따른 경우

나. 위반행위에 따른 거래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업무”를 “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5조제3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의 건전성 규제를 받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다만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3조제3항제3호중 “용역거래”를 “용역거래·자본거래”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3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거래당사자 및 관

게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요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⑥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와 송부 또는 검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중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6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9호중 “자본거래의 허가와”를 “자본거래의”로 한다.

제3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의 신설·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의 접수

2.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된 사무를 보좌하는 경우 및 이 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신고의 접수”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로 하며, 동조제6항(중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거래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조 및 제2조중 “외국환거래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하고, 제5조제2호의2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며, 제7조제2항제2호 본문중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전단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4조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장기신용은행법”을 “「장기신용은행법」”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

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국산업은행법”을 “한국산업은행법”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중소기업은행법”을 “중소기업은행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나목중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4조제2항제3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며, 제36조제3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기한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 ③(허가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본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영의 시행일에 자본거래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이유**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자본거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외환거래의 자유화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과 기업 등의 대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외채권 회수의무 기간의 연장(영 제12조제2항)

- (1) 대외채권은 그 회수의무기간이 만기일 등으로부터 6월 이내로 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사정에 의한 지불연기, 파산에 의한 절차진행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채권 회수의무 기간 이내에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 기업 및 개인 등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음.
- (2)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기간을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 이내에서 1년 6월 이내로 연장함.
- (3) 대외거래의 다양화에 맞추어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업 및 개인 등이 무역거래를 보다 안정적

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기능의 보완(영 제33조 제3항제3호)

- (1) 관세청의 검사범위가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만 검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서 수출입거래 및 자본거래가 혼재된 거래에 대하여서는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2) 관세청의 검사범위를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으로 확대함.
- (3) 불법·편법 외환거래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은행의 검사기능 보완(영 제33조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 (1) 자본거래의 신고제 전환 등 외환거래의 자유화 폭이 확대됨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이 되는 자본거래 등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한국은행의 검사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2)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및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하여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거래당사자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행하는 검사에 공동참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3) 한국은행의 주요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기능이 보완됨으로써 국내외간 대규모 자금이동에 따른 외환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영 제37조제6항 신설)

- (1)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으로부터 외환거래정보를 보고받고 있으나,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2)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되는 거래정보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3)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보다 정확한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외환의 유·출입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